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27
----------	-------

발의연월일 : 2025. 9. 19.

발 의 자 : 이연희 · 박정현 · 장종태
김정호 · 송재봉 · 임미애
강준현 · 정준호 · 박 정
염태영 · 홍기원 · 김남희
박상혁 · 신영대 · 이광희
김기표 · 정태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자도로사업자로 하여금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획에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보강 또는 교체·점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도로법 제60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현행 도로법 제6조).

그런데, 현행법에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민자도로에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특히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의 유·무료 여부를 막론하고 도로이용 전 과정에서 단절 없는 구현과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상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5항제7호).

법률 제 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5항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자도로 지능형교통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⑥ ~ ⑨ (생략)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6. (현행과 같음) 7. <u>민자도로 지능형교통체계</u>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현행 7호와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